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4. Vol. 87 No.2 pp. 7~43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 정책의 탈구

김혜영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 정책의 탈구*

김혜영**

초 록

지구화와 함께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 역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이주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구비하게 만들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의 하나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정책은 최근 급진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은 주요 지원대상을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그리고 이들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가족생활유지와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적실성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이 끈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짚어보고, 한국 다문화현상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내포된 가족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가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뒤얽힌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인해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는 쉽사리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문화정책에 내포된 다문화주의적 요소는 기형적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변질됨으로써 다문화개념의 혼용과 오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부계 중심적인 가족주의색채가 강한 다문화가족정책은 향후 국제결혼의 감소와 노동이주의 증가가 예견된다는 점에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향후 정책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지구화, 이주, 국제결혼, 다문화주의, 가족주의, 다문화가족정책

* 이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NRF-2013-SIA3A2054579).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교수(khy222@sookmyung.ac.kr).

I. 들어가는 말

지구화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는 노동 및 결혼이주의 증가는 이미 알려진 지구화 현상의 하나로, 우리사회 역시 그러한 변화를 체감하는 중이다. 1980년대부터 저임의 단순노동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한 이래, 최근에 와서는 결혼이나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해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성원들 역시 지구화된 삶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데,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원이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 분거를 선택하는 가족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음이 그것이다.

장기간의 노동이주나 결혼이주는 직장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제적인 분거를 선택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낯선 곳에서 장기간 동안 노동자로 생활하거나 결혼을 통해 혼자서 새로운 문화권의 가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주자의 삶은 다양한 제도와 문화와 조우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주자의 증가는 출신국이나 유입국 모두에게 새로운 쟁점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은 결혼당사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자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결혼과 동시에 가족안팎에서 생경한 생활양식과 조우함으로써 크고 작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접변(cultural acculturation)을 가져오게 된다.

국제결혼은 금세기만의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이 주류를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당시의 국제결혼은 정상가족 경계 밖의 이례적인 현상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주당사자가 한국남성이며, 이들의 배우자는 주로 우리와 인접국인 아시아국가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이주의 지구화 현상을 체험하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동 경험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한국사회에 유입된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를 넘어 이들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을 표출하는데, 외국인 이주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노동현장의 목소리로부터 국제결혼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 제도의 긴장과 충돌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긴장과 균열은 곧 국민국가 중심의 문화나 법, 행정체계의 적실성과 효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담론의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 공표를 통해 결혼이주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력 관리 차원에 지나지 않은 이주민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문제가 2005년 처음 대통령 지시과제로 격상된 직후인 2006년에는 ‘다문화·다종족 사회로의 전환’이 공식적으로 선언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듬해 5월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연이어 공표되는 등 정책지형의 급속한 변화가 확인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동시에 실질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구비하는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된다. 실제로 2006년 21개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출발한 다문화가족정책전달체계는 2014년 현재 전국의 217개소에 달해, 불과 8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문화관련 중앙정부 사업예산은 2008년 300억 원대에서 2012년 900억 원대로 3배 이상 증가해왔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사업까지 포함하면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연합뉴스, 2012. 12.21; 조현상, 2013: 135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처럼 급성장해온 다문화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비판적 평가가 집중되는 것은 바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이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집중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격과 전개과정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리 및 이민행정 관련법임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를 표방하면서 재한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계획과 서비스실행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을 둘러싼 비판은 정책의 방향과 추진방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전달체계운영의 효과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는 바로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노동이주자나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이 과연 국내 이주자들을 포용하는 다문화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급속하게 전개됨에 따라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온 다양한 활동이나 관련 단체들조차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으로 전환, 흡수되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오히려 소외되거나 다문화주의 자체를 탈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윤인진, 2008; 김정선, 2011). 이는 곧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의 범주가 지나치게 협애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적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 나아가 다문화정책의 방향전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고는 이제까지 논의된 다문화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이 급속하게 추진된 배경과 그 주된 논거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징과 위상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증가해온 국제결혼의 특성과 함께 한국의 다문화 현실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방향으로부터 다문화주의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 주요한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즉 연구의 주된 관심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과연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왜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방향과 특징 및 한계를 명확히 짚어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가족정책이 다문화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그러한 우려와 비판의 근원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설정에 주요한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검토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주의나 이론적 논의의 출발은 90년대 중반이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논의의 방향과 흐름은 지금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90년대 중반의 다문화논의는 구체적인 이주인구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기 보다는 서구문화가 유입에 따른 문화적 충돌이나 종교와 계급 등 특정 집단에 의해 향유되는 소수문화와 주류 혹은 지배문화의 긴장과 갈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논의는 추상적 수준에서의 문화다원주의나 다양성을 검토하는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박푸름·김재일, 2013).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재한외국인들의 삶과 이들의 한국 사회내 위치를 구조화하는 국내의 법, 제도, 그리고 이들 존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다문화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논의의 지형이 형성된 시기는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혜순, 2008).

요컨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논의 역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생활실태로부터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관련 연구들은 몇 가지 특징에 따라 구분가능하다. 우선 경험적인 연구나 이론연구를 망라하여 구체적인 대상자별 연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사회의 주된 유입인구는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자라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이주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 등 한정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결혼이주자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연구로 이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들 가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문화 담론이 주도되고 확장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최근에 와서는 국내외 다문화정책을 비판하는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서구와 달리 우리사회는 다문화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보다는 다문화 가족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대한 소개와 실태에 관한 연구로 부터(보건복지부, 2005; 여성가족부, 2013), 이들의 시민권과 모성권과 관련 이론적 논의(김민정 외, 2006; 김영옥, 2007; 김혜순, 2008; 황정미, 2011, 2012; 남지민, 2012; 양현아, 2013)를 꼽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는 이주여성의 출신국가 및 이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김오남, 2006; 신경희·양성은, 2006; 강유진, 1999), 이주동기와 과정은 물론 한국사회의 정착 및 정착 후 적응과정을 살펴본 연구(정기선, 2008; 한건수, 2006; 김이선 외, 2006; 김민정 외, 2006; 김현미, 2006; 이해경, 2005)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연구와 함께 점차 이들 가족에 대한 연구 역시 증가해 왔는데, 그러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5년-2010년에 발표된 다문화가족연구들은 대체로 결혼 및 부부관계적응, 자녀의 심리적 적응, 한국생활적응, 지원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나 부부관계 및 자녀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최정혜, 2010).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문화이론에 관한 소개와 함께 국내외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다문화 담론을 분석하거나(문경희, 2006; 김희정, 2007; 윤인진, 2008; 오경석 외, 2007, 김혜순 외, 2007) 서구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을 비교·연구한 논의가 있다. 예컨대 이종렬(2008)은 미국 사례를 들어 다문화정책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논의하는가 하면, 주효진(2008)의 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가 있다. 최종렬(2010)은 비교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다문화주의는 각 나라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집단별 특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에 와서는 최근 서구 몇몇 국가에서는 나타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과 퇴조의 흐름을 소개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논의가 있다(육주원, 신지원, 2012; 김희강, 2013; 설한, 2014).

이와 함께 구체적인 다문화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다문화이론의 소개와 함께 관련 법·제도도입을 검토하거나 관련 정책의 제안·평가(김남국, 2005, 심보선, 2007; 김선희, 전영평, 2008)로 부터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성과 태도에 관한 연구(장승진, 2010;

황정미, 2010; 윤인진, 송연근, 2011), 이주노동자 정책의 도입과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심보선, 2007)와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 및 다양한 집단의 다문화정책수요를 평가, 분석하는 연구(한건수·설동훈, 2007)도 있다.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비판들은 대체로 다문화주의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다문화주의를 수사어로만 활용하는 한국적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되고 있다(김영옥, 2007; 김혜순, 2008; 최종렬, 2009; 김정선, 2011; 양현아, 2013). 따라서 다문화 담론의 내적 모순이나 그것이 갖는 사회적 파장 등에 관한 이론논쟁으로 확장되기보다는 일부의 논의를 통해 서구 다문화담론의 한국사회 적용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최종렬, 2009, 2010; 김종태, 2013). 다문화관련 논의에서 가장 비판적이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구조와 주요 논거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정상기, 2009; 정광호, 2009; 주성훈, 2010; 최윤정, 2013).

예컨대 라휘문(2011)은 지원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박푸름과 김재일(2013)은 개별센터들의 높은 이직율과 낮은 급여 등 인력활용 및 운영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평가, 분석한 김준식·안광현(2012)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체계와 목표, 추진내용 및 대상, 추진 방법 등을 살펴본 결과, 추진목표의 비명확성, 비구체화, 부처별 편의주의적인 추진방식과 추진대상 선정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관련정책의 개선방향을 연구한 권영호(2014)는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상호 중첩성과 더불어 정책의 누락으로 인한 정책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 2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을 평가한 조현상(2013)은 1차 기본계획에 비해 진일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제의 현실적용가능성과 함께 정책비전의 정치적 실현 및 사회적 수용성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근거로 2차 기본계획의 적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윤정

(2013: 269-273)은 다문화가족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을 단일하고, 단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주 여성의 개인적 욕망과 이들이 가진 복합적 정체성은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 착목한다.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화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한국사회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이들을 규정하고 이들의 ‘어머니 노릇’ 수행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제 가족주의적 국민화 통치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관주도형 다문화정책의 대상과 방법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정책대상을 결혼이주자 가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내 이주인구의 또 다른 축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태생적으로 정책범주에서 배제되며, 결혼이주 당사자 보다는 그들의 가족유지와 자녀양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보다는 인구대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이 갖는 정책대상자의 범주와 경계에 관한 논의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어온 바, 결과적으로 다문화정책의 제한적인 정책대상화와 이들의 사회인구적 특성이 곧 우리사회 다문화정책의 정책지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경희, 2006; 김영옥, 2007; 김희정, 2007; 양현아, 2013; 권영호, 2014).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족정책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제시되어 있는 자녀관련 정책마저 자녀의 공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다수 지원 프로그램이 결혼이주 여성이나 그들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절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족내·외적 통합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김혜순, 2014: 329-330).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모호성은 결국 이민정책, 사회통합정책과 중복·경합의 문제를 낳게 되며, 나아가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준식, 안광현, 2012; 김혜순, 2014).

이처럼 다문화담론이나 정책에 관한 논의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크게 확장되어왔으며, 대체로 현재의 정책프레임이 다문화주의의 실현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비판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는 ‘결혼이주자’와 ‘출생국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협애한 대상만을

정책화합과 아울러 이들의 가족생활유지와 자녀양육과 연계된 가족서비스의 편중을 꼽고 있다. 노동이주자나 이들 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이 지원은 부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정책마저 제한적인 범주에서만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에게는 ‘지원대상자’라는 낙인을, 내국인에게는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의 연계와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역차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은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정당성과 적실성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다(조현상, 2013).

Ⅲ. 가족주의의 외연적 확장과 다문화주의 :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 담론과 다문화 현실

지구화로 다양한 문화권과의 빈번한 접촉이나 교류, 특히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 혹은 기성 문화와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이주자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부터 그와 연관된 정체성과 소속감, 사회성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우선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선택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사회로 이주해오고 있으며, 이들과의 접촉경험과 이로 인한 문화충돌의 경험유무, 이주자들의 사회적 요구 등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 발달에 힘입어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다양한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다문화주의는 모든 세계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역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다문화주의에 대한 합의는 보편적 가치 차원의 개념규정에서만 가능하다(김혜순 외, 2007).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은 구별되어지는 개념이다. 다문화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다문화정책은 이념으로서의 가치지향성을 넘어 이를 요청하는 실재의 다문화적 상

황으로 부터 미래에 도달해야할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현실구속적인 개념이다. 이에 비해 다문화정책의 핵심가치인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내 다양한 인구학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 혹은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지향해야할 가치, 역차별적 정책 등을 지칭하는 다양한 의미와 층위로 혼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주의를 특정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로 잠정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가치지향의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으로서 다문화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실현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정책 역시 매우 다양한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특정한 대상자들을 일정 영역에서 선별적인 권리만을 부여하는 차별적 배제정책이 있는가 하면, 이주대상이나 범주를 제한하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자국의 사회성원으로 동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정책,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주의 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970년대 이후 이민국가에 해당하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은 동화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왔다. 다문화주의정책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집단의 언어와 문화 등의 공존을 지원하고 인정하는 정책지향으로, 최근 들어 다문화주의는 각 인종이나 민족이 문화적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윤인진, 2008; 박진경, 2010: 263-265)

이처럼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를 구현하는 일련의 사회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남국, 2005; 윤인진, 2008; 박진경, 2010: 261-262). 사회정책은 구체적인 처방을 위한 명확한 정책대상으로서 ‘사회적 현실’이 정의되고, 투여되는 제도적 수단들이 사회적 자원,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해당 사회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된 것으로 규정한 티트무스(R. Titmuss, 1974)의 정의를 수용한다면, 다문화 정책의 구현에는 반드시 ‘다문화적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어도 ‘다문화사회’로의 전망에 대한 사회성원의 공감의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설계에 따른 제도적 수단의 마련에는 상당한 재정과 함께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곧 그 사회의 복지 및 경제수준으로부터 주요한 사회의 윤리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G Lewis, S Gerwitz, and J Clark, 2000: 5). 특히 작금의

다문화정책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다문화 현실’을 둘러싼 상황 진단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논의는 곧 다문화정책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고 가늠해보는 출발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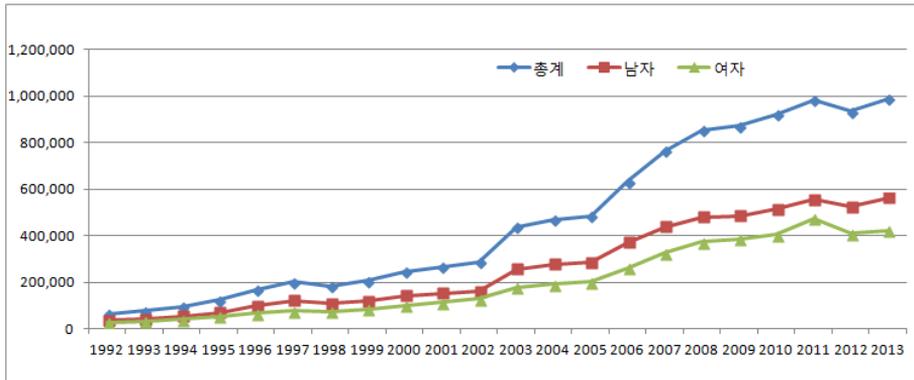
이런 점에서 이들 국가와 한국사회의 특징들을 면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00년 중반이후 다문화관련 논의는 폭증해 왔지만, 정작 다문화주의가 관철되는 정책수단으로 다문화정책의 범주와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의 조건과 특징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다(정장엽, 정순관, 2014; 임동진, 장우영, 2012).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소홀히 한 채, 보편적인 인권이나 시민권 보장을 촉구하는 이론적, 규범적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만이 일방적으로 소개되고 확산해 왔다는 일면의 비판도 가능해진다.

우리사회에서 이주민의 역사는 길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이나 수용성은 식민지배나 오랜 이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 민족 집단의 지배와 피지배를 경험한 서구사회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구사회조차도 다문화정책이 발달해 온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민 국가였던 캐나다나 호주뿐이며, 대부분의 유럽나라들 역시 약한 다문화주의 국가에 속해있다. 또한 서구의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우리사회에는 원주민과 준국가-국민집단의 경계를 경험할 소수민족집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열풍처럼 불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주의는 서구와 달리 최근에 급증한 결혼이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국민배우자로서의 이주해온 외국인 외에는 이민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최종렬, 2010: 239-243). 다시 말해 우리사회는 우리와 다른 민족이 새로운 ‘사회성원’으로 다가오는 현상을 일상적으로 수용하는 수준이기 보다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계기로, 그리고 초저출산의 일상화되는 사회현실에 직면하여 바야흐로 다문화 현상을 경험하는 출발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이주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이후 중소기업과 이른바 3D 업종 인력난의 대응책으로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이다. 이후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을 위한 노동인구 유입이 서서히 증가되어 왔으며,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결혼이주자

의 증가가 가세하면서 다양한 민족의 인구이동을 구체적으로 목도하게 되었다. 2000년 한국거주 외국인의 수는 21만명 수준이었으나 2014년 현재에는 160만 명을 넘고 있어 불과 십여 년 만에 8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수준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총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내외로 그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림 1] 국내 등록 외국인 수 추이(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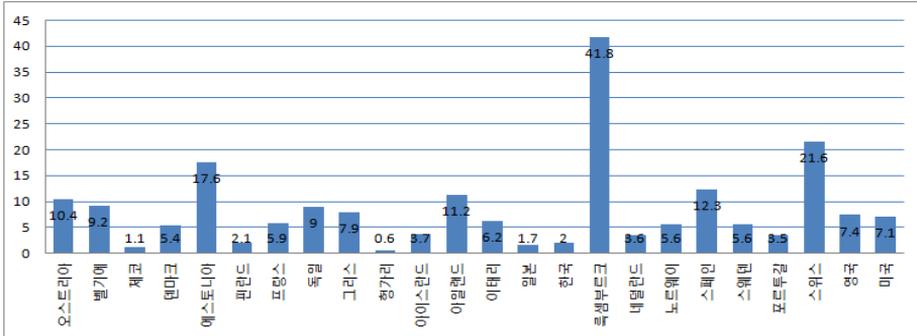


출처 :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2013)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014년 기준 160만 명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00만 명이고,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비자를 가진 외국국적 동포가 23만 명 내외이다. 이들을 국적별로 다시 구분하면, 중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 497,989명, 한국계 러시아인 4,975명, 재외동포 235,953명으로 이들은 모두 738,917명에 달한다(법무부, 2013). 즉 등록체류 외국인의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절반을 넘는 사람들이 동일민족의 범주 내에서 문화적 동질성이 기대되는 이주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재한 외국인 가운데 순수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내외로 추산할 수 있다. 다문화, 혹은 다민족, 다종족 사회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러한 국내 재한외국인의 비중이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그림 2] 참조).

[그림 2] 2010년 OECD국가의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

(단위: 천명, %)



자료: OECD (2014), Foreign population (indicator). doi: 10.1787/16a914e3-en (Accessed on 12 October 20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우리사회 내에 정주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생계기반을 마련한 일부 이주노동자들과 국적취득과 더불어 한국인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이 확실시 되는 결혼이주여성,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와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해외동포 집단 가운데 일부의 집단으로 좁혀진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비전문취업(E-9) 다음으로 규모가 큰 방문취업자(H-2)들의 대다수가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라는 사실은 이들과의 문화차이 못지않게 문화적 동질성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주자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의 문화적, 민족적 인접성이 높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바로 현재 추진되어 온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사회의 특징적인 다문화적 현실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다문화정책은 정주가능성이 높고 우리사회와의 동화가 용이한 집단만을 표적화, 대상화하는 주요 배경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를 다민족다문화사회로 규정하기에는 이주의 규모는 작고, 더욱이 안정적인 정주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가운데 생경한 민족 및 문화집단의 비중은 특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곧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인 동시에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통해 이주자들의 체류자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가족생활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법,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이주자의 수용은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면서도 이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있으며, 가족동반을 불허하는 등의 이민제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황정미, 2012).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를 이민자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정치경제적 지형과 맞물려 있어 선부른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노동이주자를 합법적인 이민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 다문화주의가 퇴조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사회 역시 당분간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조직적 주장하는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에서의 불합리한 대우와 안전하지 않은 그들의 고용환경 등 ‘일자리’와 연관된 불만이나 인권침해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연동하여 자신들의 자격과 권리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는 아직 분출된 바 없다. 예컨대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범죄건수 가운데서 폭력, 교통, 절도 등이 절반을 넘을 만큼 단순범죄의 비중이 높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감이나 불만족, 부적응을 개인차원에서 표출하는 것일 뿐, 그들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공식적 요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에서는 비록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은 있을지라도 이주자들과의 갈등이나 세력다툼으로 인한 우리의 고유한 권리 침해 경험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김종태, 2012).

그러나 다른 한편, 2005년의 경우 외국인 강력범죄 건수는 228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703건으로 약 세배가량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2013).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가운데 비전문취업이나 연수취업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단순 기능인력의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거의 부재하며,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는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와

서 구직 및 취업활동을 하면서 정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인구의 실질적 감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다면, 노동이주자들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수가 더욱 늘어난다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에게 정당한 시민적 권리부여를 둘러싼 논의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 이들 이주 집단과 내국인의 갈등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결혼이주여성들만을 분리하여 정책 대상화하는 정책은 상당한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2. 가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착종: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정책

국제결혼의 문제는 인적이동의 지구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우 국제결혼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결혼의 증가는 곧 한국가족의 문제와 직결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주정책에 대한 접근이 출발시점부터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초저출산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실질적인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을 낮추는 이른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결혼은 이주의 세계화 현상으로서의 특질보다는 한국가족의 유지 및 혈연재생산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안정화를 통한 저출산 해소와 결혼시장 정상화라는 수단적 성격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결혼이주의 폭증과 결혼중개업의 폐해로 인한 외국인 여성과 이들 자녀의 보호수단이 필요해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다문화 가족정책이 외국인 정책의 총괄로 비춰질 만큼 빠르게 성장확대된 배경에는 바로 한국가족 모순의 해법으로 활용한 정부의 속내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혹자는 국가의 기획된 ‘다문화가족 만들기’로 평가하기도 한다(조현상, 2013).

우리사회는 2007년을 기점으로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결혼이민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이주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한시적 체류만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소위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한국인 배우자와 이들 자녀만을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다문화가족정책이 과연 다문화, 다민족사회로의 이행에 합당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 지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외국인의 이주, 정주 및 국민화 정책이나 다문화주의 표상으로서 설정된 여타의 정책프레임이 크게 미비한 상황에서 이주자 정책의 주요 법률적 근거의 하나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다문화정책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다양하고 크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체류외국인 가운데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해외동포의 비중이 크고, 결혼이민자들이 갖는 특수성은 한국의 편향된 다문화정책의 정당화기제로 작동될 뿐만 아니라 단시간 내에 급성장하는 문화, 정서적 배경이 되어 왔다. 국제결혼 이주자들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표출하고 향유하며 교류하는 행위자임은 분명하나, 상대적으로 다른 이주자들에 비해 결혼을 통해 가족 삶의 과정으로 한국문화를 빠르게 수용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특수한 위치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즉 요동치는 가족불안정성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다문화가족정책이 수용되어옴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국민적 호응과 후원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의 방점은 무엇보다 이들의 가족형성 및 유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가족주의의 변형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가족현실은 과거의 가족이념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시장상황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가족간 계층격차를 초래함에 따라 그동안 가족이 수행해온 보호와 돌봄의 기능을 급격하게 위축시키는가 하면, 요동치는 노동시장에서 가족생활보다는 일과 자신의 직업경력을 우선시하는 사회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특히 가족관계 중에서도 자녀는 가족전체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시장질서가 팽배해지면서 가족의미의 퇴색과 극도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최적의 단위로서 핵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화, 재생산 되는 이중구조

가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2013). 최근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선언과 다문화가족정책의 급속한 전개과정 역시 바로 이러한 가족주의 열망과 무관하지 않다.

가족 돌봄의 기능적 공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대다수 선진 산업국가의 공통된 경험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국의 복지이념 및 수준과 여성지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가족을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제도로 규정하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유대와 정서적 결합체로서 재개념화하고¹⁾, 이들의 삶의 방식과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수렴된다. 우리 역시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2005년부터 시행, 추진되고 왔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형성과 유지’를 가족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가족단위’의 서비스 제공을 가족정책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주의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국면에서 확인되는 가족의 개인화추세와는 상치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단위로서의 가족’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는 대립적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집합으로서의 가족 가치와 기능을 강조하고, 주체로서의 개인보다 가족내 역할과 지위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수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혜경, 2005; 김인숙, 2007, 김혜영, 2012). 실제로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분명히 보수적인 가족주의에 기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중의 ‘가족판타지’를 충족시킴으로써 빠르게 법제화되고 추진되는 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²⁾. 요컨대 가족다양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가족정책의 주요 기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체적 관심보다는 혼인으로 맺은 가족의 유지와 출산장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가족은 내적 특수성과 더불어 이미 가족변화의 세계동조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부부의 성역할에 기반한 부모자녀관계

1) 예컨대 프랑스 정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결혼, 가족형태, 출산순위, 여성취업 등에 대하여 불간섭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더 이상 특정의 가족형태가 주류를 차지하지 않는 프랑스의 가족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2) 현 가족정책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논의는 각각의 세계관이 다른 학문분과나 접근법에 의해 그 평가가 상이하나, 여기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자세한 논의는 김혜경(2005), 강희경(2005), 김인숙(2007), 김혜영(2012) 등을 참조하라.

나 가족문화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가족형태와 구성 방식이 상이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가족정책은 여전히 가족유지와 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족내부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수동적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한부모, 미혼모,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증가하는 조손가족, 1인 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제한적인 수준에 놓여있다. 신사회 위험 증후가 이미 만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쟁점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만이 뜨거울 뿐이며, 따라서 가족정책 역시 가족유지를 통한 총사회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련 사업이 지원되는 수준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점차 복지의 책임주체를 다원화하려는 국가의 기획, 즉 국가와 시장의 개인보호체계가 균열되는 현실에서 돌봄 및 보호의 공백을 채워줄 책임 주체로서 ‘가족’을 강조하고, 그러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가족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김홍주, 2008).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 역시 상당부분 불안성이 구조화되어 있는 국제결혼가족의 가족생활 적응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러한 가족유지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정책 대상화되어 동원되는 현실이다.

국제결혼이 갖은 불평등성과 불안정성, 나아가 일부 국제결혼이 갖는 매매혼적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국제결혼에 대한 가족정책의 효과는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업체의 주선이나 인위적인 소개를 통해 속성으로 결혼결정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자연스러운 교제를 거쳐 혼인에 이르는 일반 남녀에 비해 결혼을 둘러싼 성역할 긴장 및 갈등을 충분히 예비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제결혼을 통해서라도 정상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한국남성들은 변화하는 젠더관계의 수용보다는 인습적인 결혼형태의 회귀와 이의 실현을 목표로 국제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실 외국인과의 혼인을 주도하는 것은 대다수 한국남성이며, 이들과 배우자인 외국인 여성과의 평균적인 연령 차이는 9.1세에 달한다(통계청, 2013). 또한 이들 배우자들 대부분이 우리보다 경제발전이 뒤늦은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들 결혼의 가부장성을 주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결혼이주여

성의 시민권은 결국 사적관계 속에 묶인 가족지위 그 이상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다수 한국여성들이 당면한 자녀재생산과 가족 돌봄, 그리고 가사노동이라는 성역할수행과 더불어 빈곤국 출신의 비자립적인 외국여성의 이미지로 유포되고 대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결혼이주여성이 가부장적 가족에서 아내나 어머니로서 자신의 지위를 수용하는 한에 한해서만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는 ‘가부장적 다문화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매우 유효해 보인다.

다문화가족을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분히 정상가족 중심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혼인이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이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이주여성들이 하루 빨리 한국인 남성가족의 일원으로 동화되는 것이 가족의 안정성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이들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도가 분명하게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과 다문화주의 가족정책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전자는 가족안의 다문화성을 전제하고 있다면, 후자는 가족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양현아, 2013: 326-330).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분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일부 다문화주의를 가미한 것에 불과하며, 다문화가족정책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효과는 이들 가족과 주류문화집단들이 가급적 대등한 삶의 조건들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IV.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징: 성과 및 한계를 중심으로

1. 다문화가족정책의 전개과정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2005년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대통령 주재 위원회 등에서 결혼 이주여성, 이주자에 대한 체류안정화 및 생활안정대책이 다루어지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압축적인 경제성장과정을 통해 단

시간 내 이민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전환되면서 이민자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다뤄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국적법’(1997년)에 이어 줄 2005년 ‘출입국관리법’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면서 2005년 8월 사회문화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결혼이민여성의 체류안정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4월 대통령 주재 제74회 국정과제 회의인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사회통합 대책’에서 차별금지, 복지향상, 사회통합 방안 등이 논의되기 시작한다(빈부차별시정위원회, 2006.4.26). 이 회의석상³⁾을 통해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언어·문화이해 교육,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전달체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구축 등의 주관 부처로 여성가족부가 지정되었는데, 이는 출발부터 적극적인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이 ‘결혼이민자’로 한정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⁴⁾.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 운영된 21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는 이듬해인 2007년에는 38개소로 확대되었는데, 이때부터 다양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 예컨대 2007년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시범사업이 29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추진되고, 한국어 방문교육이 농림부 농특기금 시범사업으로 30개소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달체계가 명시화되고(제12조 제1항, 제2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변화와 함께 전달체계가 급속히 확대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2008년 3월 제정, 9월 시행).

-
- 3) 본 회의 결과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되었다. (1)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 (2)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하고 외국인전용쉼터 확대 (3)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4)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 및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 반영 및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5)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6) 정책에 다문화 관점 확산 및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7)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김혜영, 진미정, 2014).
- 4) 물론 이러한 정책지형에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출범한 여성부의 조직 내적 요구, 즉 여성가족부의 조직 및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새롭게 가족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법적,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다(송지연, 이태영, 2012: 169)

그러나 당시 법 제정을 위한 관계자들의 공청회의 자료에 의하면, 동법은 이미 기존의 외국인정책의 근거로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법’에 중복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관계자는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김남일(2007)은 혼혈인·이주자의 문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규정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또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이미 법무부에서 외국인정책과 통합관리하기로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⁵⁾. 이에 대해 당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정책대상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므로 정책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등’은 최초 입국 시와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을 형성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며,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문제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특수한 방법으로 형성된 가족 문제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정책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5에 의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문화가족은 일반적인 한국인 가족과 언어 문화적 배경 및 가족문제의 유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정책의 내용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기본소양교육’, ‘생활정보제공’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특수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07: 63-65).

이처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이유는 다문화주의의 구현이 아닌 특수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우리사회성원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 다만 이들의 가족형성기 초

5) '07. 5. 3. 국무조정실 주재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회의결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재한외국인정책을법무부가 총괄키로 합의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의 결혼이민자 관련분과위원회위원장을 맡아 결혼이민자대책을 주관키로 결정된 바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07).

기 경험하는 어려움은 일반 내국인 가족들은 경험하지 않는 특수한 어려움, 즉 언어소통과 생활습관 등과 같은 이주자의 문화적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 및 문화적응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출발부터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로서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내걸고 있는 명칭과 달리 이 법은 동화주의에 기반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만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상에서 제시한 주된 지원 내용 또한 1)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 6조), 2)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제 8조), 3)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제 9조), 4)아동보육, 교육지원(제 10조) 등 한국사회로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김정선, 2011: 233).

이후 2009년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문화가족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개선종합대책 보도자료 2009.6.21). 하지만, 이때의 논의결과 역시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⁶⁾,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부처로 역할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외국인정책으로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거의 부재한 수준이다. 즉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주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과 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 정비방안에만 집중되고 있어 외국인 관리 전반을 다루었다고는 볼 수 없다⁷⁾. 특히

6)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9년 논의 당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부처로 명기되고 있다.

7)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법적 국제결혼방지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및 결혼사증심사 강화, 둘째,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의 적극 검토 및 국적취득 간소화 추진, 셋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 배우자교육 확대, 넷째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실 단계적 확대, 다섯째 적합 직종 개발 등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 강화, 그리고 끝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다문화가족 예산을 복권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 등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재정비에 관한 것이었다(김혜영, 진미정, 2014).

이러한 논의과정은 유사한 시기에 제정된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과의 영역조율 문제가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이민자’라는 용어사용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과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문화정책의 특성보다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건강한 가족생활지원을 강조하는 결과로 낳게 된다. 다른 한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대국민 설득(persuasion)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결혼당사자들의 가족생활 지원과 이들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조하는 다문화가족정책 목표는 한국인들의 가족주의 정서에 부합하고 있어 정책지형에 매우 유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송지현, 이태영, 2012; 황정미, 20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립되었는데,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의 비전 아래 총 5대 영역⁸⁾의 20개 중과제가 발표되었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제3조의2, 제3조의 3, 제3조의 4), 2012년에는 12월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어 향후 5년 간 총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6대 영역 86개 세부 과제가 공표된 바 있다. 또한 2차 기본계획에는 평등한 부부 및 소통적인 가족관계 조성 등 건강한 가족 문화의 정착을 위해 쌍방향 언어 및 문화

이해의 제고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구현하고, 쌍방향 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추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조현상, 2013).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향상, 부부·배우자교육, 아버지교육,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법률과 인권 교육 등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이

8) 5대 영역은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2) 국제결혼증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이다.

연간 60시간 이상 시행되고, 취업기초소양교육, 워크넷 등록 및 연계로부터 새일센터·고용센터 연계 등의 방식을 통한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을 통한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서비스, 만 3~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영역, 자아·정서·사회영역, 문화역량강화 영역, 시민교육영역의 교육지도를 포함하는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서비스는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되 한국어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는 1회(10개월까지), 부모교육서비스는 1회(5개월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족 해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문화사업,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센터의 특성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규정해온 ‘결혼이민자’와 이들의 배우자 및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은 노동 및 가족단위의 이주를 제한하는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정주형 이민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초기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 곧 이민자관련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아닐 수 없다(황정미, 2011: 67). 초기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차별, 가정폭력,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논의되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응하는 정부 개입 논의의 초기 핵심은 ‘피해자 보호’에 있었다. 애초의 정책의도에 비춰본다면, 초기 대응을 통해 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과로 평가가능하다. 즉,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정책 개입의 당위성과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기반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0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

한 법률」(07), 「다문화가족지원법」(08)의 제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크게 증가되어 2014년 현재 217개소에 달한다. 또한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278억 원을 투입(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하였으며, 2013년에도 국비 953억 원, 지방비 279억 원 등 총 1,232억의 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무엇보다 1차 기본계획에 이어 발표된 제 2차 다문화기본계획은 진일보된 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1차 기본계획이 다문화성 수용을 위한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선언 수준임에 비해 2차에서는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조현상, 2013: 141-142).

특히 많은 비판과 논란이 되어 왔던 다문화가족정책의 대상이 점진적 확대되어 왔음은 매우 유의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제정 당시 다문화가족의 정책 대상은 출생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혹은 혼인귀화자)에 국한되었으나, 2011년의 법개정으로 출생한국인 뿐 아니라 인지 및 귀화에 의한 한국인 간 결혼도 다문화가족으로 포함되면서 결혼이민자가 없는 다문화가족, 즉 혈통적 한국인 포함을 명시한 규정에서 한걸음 나아가 법적 한국인을 정책대상화하는 최초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김혜순, 2014; 황정미, 2011). 이러한 법 개정에 상응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역시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포함되고 있다. 예컨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 가운데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외국인 가족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좁은 의미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의미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가족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지적은 바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정책비전을 담지하지 못하는 정책의 틀에 관한 것이다.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특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다문

화가족정책의 다문화 개념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조현상, 2013:143). 정책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가족정책의 대상은 다문화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들을 포괄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책대상을 범주화함으로써 정책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함되는 일부와 배제되는 나머지 외국인 집단으로 구획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포괄적이지 않은 정책의 대상화는 거꾸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소수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적 개입으로 나타나면서 의도치 않게 다문화가족을 소수자, 취약계층으로 낙인화 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핵심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 당사자들도 기피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3). 이런 점에서 최근 새로이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으로 고려되는 한국계 중국인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은 자신들 스스로가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지원법의 목적과 실제 사업의 간극 발생이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제1조)”을 제일의 목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작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방적인 동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상이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성일방의 적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정책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가족정책’으로 다문화주의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가족정책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고향과 정착사회를 동시에 연결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적 사회관계를 구축하는 초국적 가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다문화가족정책의 근간은 주로 다문화가정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편입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김민정, 2013). 이주자들은 정치적으로는 거주하는 국가의 지배를 받지만, 경제적 활동과 문화적 활동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지향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최종렬, 2009).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족정책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정책은 가족단위의 정책임에 반해, 다문화가족정책은 대체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그들의 자녀가 각기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가족정책의 정체성이나 특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암묵적으로 가족유지와 적응의 주된 책임을 결혼이주자와 자녀들로만 규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⁹⁾(김혜순, 2014: 328-329; 김유경 외, 2013).

이와는 별개로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의 중복사례 발생 및 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2개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왔으나, 최근 유사중복의 문제점과 함께 부처 간 연계·협조체계 미흡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조정 기능은 잘 발휘되지 않고 있다(권영호, 2014; 김준식, 안광현, 2012). 이러한 정책의 중복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족정책이 갖는 모호성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일반(귀화신청자)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혼인귀화자(결혼이주자) 대상 사업으로 환원되는 정책 현장 역시 그 원인이 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3)¹⁰⁾. 이런 점은 다른 한편에서 외국인 정책 주무부서로서 법무부의 특성과 함께 부처간 위상의 문제를 낳고 있다(권영호, 2014)¹¹⁾.

9) 다문화가족지원의 대상은 외국인 결혼자와 내국인 결혼자 가족구성원(부모님, 형제, 기혼자녀 등), '내국인 결혼자와 외국인 결혼자 가족구성원' 등이나 실제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외국인 배우자 이외의 내국인과 내국인 가족 참여 프로그램은 미미하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그 결과 이들 가족이 불화나 갈등, 결혼관계의 해체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나 지원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미자, 2011; 김준식, 안광현, 2012; 김혜순, 2014)

10) 2013년 전체 귀화자 133,704명 중 83,929명(62.8%)이 혼인귀화자로 국적취득자의 대다수가 결혼이민자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중 86%가 결혼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김이선 외, 2013)

11) 법무부의 결혼이민자는 '동화'시키고, 노동인력은 '관리'하고, 미등록체류자는 '제제'한다는 외국인정책기조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형국이다(김영란, 2012).

끝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사업이 갖는 영세성과 효과성에 관한 것이다. 사업의 효과성은 상당부분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규모에 좌우되지만,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이 갖는 위상은 고스란히 다문화가족정책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다문화가족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이 범부처적으로 수립된 결과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의의는 있지만, 범위가 너무 다양하여 개별 사업들은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13년 기준 예산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이 14개, 1~5억 원 미만 사업이 24개로 총 60개 사업 중 38개 사업(63.3%)이 5억 원 미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¹²⁾. 이러한 재정 규모의 영세성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재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사이에서 불안정하게 변화해오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문제가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¹³⁾(김준식, 안광현, 2012: 207-2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의 빠른 성장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은데, 지원정책의 우선성과 범위를 둘러싼 정책갈등이 그것이다. 지금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원들과 우리로 분류되는 한국인, 한국인 집단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킹 한국인 주류집단과 조화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조현상, 2013). 이처럼 다문화와의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자칫 다른 사회구성원의 박탈감을 유발하거나 지원대상자로서의 특정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사회정책과 다문화정책 사이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이 조율되고 검토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12)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사업예산 중 75.7%는 여성가족부 예산이며, 교육부 10.5%, 법무부 4.5%, 문체부 4.3%의 순이다(김준식, 안광현, 2012: 207-208).

13) 2006년에는 일반회계(89%), 2007년 여성발전기금(58), 2008년에는 일반회계,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2011년 여성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재원의 지원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여성발전 기금조차 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V. 결어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주의에 기대어 다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 확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나날이 다양해지는 재한외국인들의 특성과 유입 동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만을 대상화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주의라는 고유한 이념실현의 수단으로서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적실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결혼 추이 변화에 직면하면서 다문화가족정책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예컨대 장기적으로 국제결혼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혼건수는 경기변동 및 혼인적령기 인구 감소 등 전체 혼인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한국남성들의 외국여성배우자에 대한 수요는 물론 아시아 여성들의 한국희망 수요에 이르기까지 양측 모두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의 지속적인 출생아 수의 감소는 곧 가까운 미래 혼인적령기 남성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주요 신부 송출국으로 분류되어 온 중국과 베트남 역시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변천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높은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혼인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으로의 혼인이주 동인은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이삼식, 2007; 이상림, 2012). 이미 2005년을 정점으로 국제결혼이 하향 정체의 수준에 놓여 있다¹⁴⁾.

국제결혼의 감소는 곧 다문화 가족정책의 지형적 변화와 연동되는 것이다. 향후 결혼이주자의 지속적 감소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결혼이주자와 귀화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의 배타성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다문화가족

14)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지역 분포 역시 변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의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 조선족 출신 혼인이주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과의 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은 2006년 정점에 이르렀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폭력 및 사망 사건 등에서 비롯된 베트남 정부의 국제결혼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잠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여성과의 혼인은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지난 2011년에는 베트남 여성들과의 국제결혼건수가 중국 여성들과의 결혼건수를 추월하고 있다(이상림, 2012).

정책은 대상자의 측면에서 더욱 소수자 지원정책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더욱 시혜적인 집단으로 특화됨에 내국인과의 형평성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새롭게 유입되는 국제결혼 이주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신규정책대상 수적 감소와 기존 정책 대상 집단의 정책요구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지형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¹⁵⁾. 이와 더불어 유자녀 다문화가족의 이혼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의 방향전환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정책이 국제결혼의 안정성 제고와 적응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결혼관계 해체가 갖는 다양한 함의를 빠른 시간 내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의 위상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비해 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급속한 기술 발달에 따른 노동시장의 전환기적 속성은 향후에도 노동이주자의 유입을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전망은 곧 다문화가족지원에 근간을 둔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환경의 변화와 장기간의 저성장 추세에서 오는 다양한 복지수요의

폭발과 사회문화 및 정치환경의 보수화 등을 염두에 둔다면 다문화주의의 확장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다. 따라서 국내의 여론과 정서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다문화가족정책’이 갖는 이점을 살리면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전환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다문화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하면서 본 논의의 결론을 갈음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금과 같은 초기 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노동이주 등 새로운 이주자들을 정책대상으로 포섭, 확장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한국인의 범주를 혈연적 관계로부터 제도권 내에 포섭된 한국인으로까지 확대

15) 한 연구에 의하면, 향후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는 2009년에 20~30대가 71.2% 차지하고, 2020년에는 40대 이상이 60% 내외로 전망되는데(김유경 외, 2013), 이러한 인구학적 변동은 곧 한국어 능력 향상과 자녀 양육 부담완화로 인한 취업요구의 증가, 국제결혼부부의 연령격차를 감안한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중고령기 진입에 따른 은퇴 및 노후준비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들 자녀의 취학 및 학령기 자녀의 증가로 학업성취도 및 학교적응 관련 새로운 정책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혼인-입국-출산-양육-자립 등 가족의 생애과정을 반영하는 정책 프레임을 기초로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즉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해온 다문화가족지원 방식은 점차 안정적인 결혼 및 가족생활 지원으로의 이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하는 법 개정이 이미 2012년에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대상자의 범주를 확장하면서 다문화정책의 ‘다문화성’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미 지구화는 가족 삶의 범주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상호 불일치하지 않은 시대로 도래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사회에서 초저출산현상이 십 여 년 동안 지속되는 현실이고 보면 점차 노동이주자와 이들 가족,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주자들을 포섭해 내리는 노력은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책대상자로서의 ‘이주자’가 부각되면서 다시 정책결정 및 서비스 지원의 주도권과 연관된 논쟁이 재연될 소지가 적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명칭 전환의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초기정착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주자의 가족 삶에 파고드는 밀착 지원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가족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외연을 서서히 확장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족정책이 추진 배경에는 ‘가족지원’을 강조하는 이해당사자들의 경합이 깔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의 정체성이 다소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역할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관계적 특성과 문화적 습속이 얽힌 이주자들을 기성의 가족정책의 근간인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가족’의 하위범주로 고정할 경우에는 역으로 ‘결혼이주자’의 특성과 ‘초국적 가족’의 위상에 걸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에 포함된 다양한 이주자가족과 국내의 다양한 가족지원과의 병렬적 관계를 넘어 유기적 공존이 가능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수용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정서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지원방안과의 공존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이주자 자녀의 건강성장 발달과 관련된 가족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가족주의가 갖는 배타성과 부계중심성을 극복하는 내국인 가족정책의 범주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면 말 그대로의 ‘다문화정책’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권 2호: 61-80
- 강희경. 2005. “‘건강가정’ 담론의 불건강성.” 『경제와 사회』 통권 제65호: 155-178
- 권영호. 2014.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20(1):83-108.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7. 『혼혈인, 이주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7.6.26
- 김남국. 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학 논총』 45(4):97-121
- 김남일. 2007.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 정책 방향.” 한국사회학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147-179
- 김민정. 2013. “다문화가족의 탈영토화와 초국가적 네트워크 특성.” 『한국생활과 학회지』 22(3): 421-436.
- 김민정 외.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 김선희 · 전영평. 2008.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행정논총』 46(4): 17-39
- 김영란. 2012.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31-67.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권 2호: 129-159.
- 김영옥, 김현미. 2013. “‘글로벌 가구(Global Household)’ 구성의 관점으로 본 한국-베트남 국제결혼가족.” 『젠더와 문화』 제8권 2호: 177-213.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유경 외. 2013.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연구』.여성가족부.
- 김이선 외.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 외. 2013. 『결혼이민자 정착 초기지원프로그램 개편방안연구』. 여성가족부.
- 김인숙. 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담론”. 『한국사회복지학』 59(3): 253-280.
-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92호: 205-246

- 김종태. 2013. “한국 다문화의 맥락적 이론화를 위하여: 캐나다 사례와의 비교”.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 김종태. 2012. “다문화 대중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족주의, 선진국 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50집: 82-105.
- 김준식·안광현. 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연구』 12(4): 127-159
- 김한성·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학』 47(2): 177-209.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자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사례
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여름호(통권 70호): 10-37.
- 김현선. 2006. “국민, 반국민, 비국민-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사회
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편 2(2) 통권 12호: 77-106
- 김현식·김두섭.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 김혜경.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 사회』
16: 67-102.
- 김혜련·여지영·정진주·백소혜. 2012.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순 외.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위원회 연구보고서.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집 2호: 36-71.
- _____. 2014.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한국사회학』 48집 1호:
209-344.
- 김혜영. 2012. “기로에 선 가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여성학』 28(3):
_____. 2013. “위험사회, 한국가족의 중층적 변화와 정책과제”. 『화합사회를 위한
복지』. 나눔: 211-240
- 김혜영·진미정. 2014. 『국민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추진체계연구』. 여성가족부
내부과제
- 김홍주. 2008. “국가의 ‘가족 만들기’와 과잉기획의 한계-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분석”. 『가족과 문화』 20(2): 90-125
- 김희강. 2013. “다문화주의의 역설”. 『담론 201』 16(4): 67-95.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응.”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pp.57-79.
- 남지민. 2012.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주여성정책 방안 연구”. 『한국정치연구』
21(1): 255-277.

- 라휘문. 2011. “이민자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한국 정책연구』 11권 1호: 43-63
- 문경희.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과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67-93.
- 박종보, 조용만. 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박진경. 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행정학회보』 19(3): 259-287.
- 박푸름, 김재일. 2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운용 현황분석의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현대사회와 행정』 제 23권 3호: 155-178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2006.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사회: 사회학적 설명”. 『2006년 한국사회 사학회 심포지움 발표 논문』
- 설한. 2014.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원인분석: 문화개념과 규범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 7권 1호: 81-106.
- 송지현·이태영. 201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39(3):151- 179.
- 신경희 · 양성은. 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4권 5호. :1-8
-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 201』 10(2): 41-76.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pp.21-56.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양현아. 2103. “가족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 실험”. 『저스티스』 통권 134(2): 298-335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육주원 · 신지원. 2012.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과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담론의 변화.” 『EU 연구』 제31호: 111-139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집 2호: 72-103.
- 윤인진 · 송연근. 2011.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이경희. 2010. “다문화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32: 509-536
- 이상림. 201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57호
- 이삼식·최효진·박성재. 2009. 『다문화 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렬. 2008. “다문화정책과 민주주의: 미국사례”.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_____. 2009. “다문화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 145-166
- 임동진·장우영. 2012. “다문화정책의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2): 95-127.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9.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9-104.
- 정기선. 2014. “국내체류 이주민 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 방향”. 『다문화시대, 이주민가족을 위한 지원강화방안』 자료집. 여성가족부
- 정상기. 200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18
- 정광호 외. 2009.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23권 4호: 231-255
- 정장엽·정순관. 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2.
- 조현상. 2013. “국가의 ‘다문화가족만들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제 2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3-2018)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4: 127-152.
- 최윤정. 2013 “한국사회의 ‘다문화’과잉과 오염현상에 대한 성찰적 사유”, 『여성학논집』 제 30집 1호: 269-273
- 최종렬. 2009. “탈영토화된 공간에서의 다문화주의”. 『사회이론』 봄/여름.
- 최종렬. 2010. “비교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사회이론』 봄/여름.

- 최정혜. 2010. “다문화가족 연구동향분석: 2005-2010년에 발간된 국내논문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22권: 79-97
- 통계청. 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건수·설동훈. 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권 4호: 111-143.
- 황정미. 2012. “다문화사회와 ‘이주어머니’”. 『아시아여성연구』 51권 2호: 103-142.
- 법무부. 2013.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
- 경찰청. 2013. 『경찰범죄통계』
- 현대경제연구원. 2010. VIP REPORT
- 빈부차별시정위원회 보도자료, 2006.4.26
- 연합뉴스. 2012. “다문화정책 5년의 명암”(2012. 12.21)
- F. Kaufmann, A. Kuijsten, H. J. Schulze, K. P. Strohmeier(2002),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Oxford Press.
- Jobson, David. 1997. Rights across Borders: Immigration and Decline of Citizenship.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Lewis, G., S Gerwitz, and J Clark. 2000. Social Policy. Sage Publications

Abstract

**Multi-Culturalism and Muti-Cultural
Family Policy: About the Gap
Between Theory and Policy**

Hye-young Kim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a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o this end, this article delineates the uniquenes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found in the West, and it shows that multi-cultural family policy does not taking into a multi-culturalism in sufficient, based analysis of making process The Support Law for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policy represente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not enough to realize the multi-culturalism and does not include valid elements of multi-cultural policy. This is caused by the 'Korean multi-cultural situation' and 'approach of the family policy drawn on Familism'. Also, Korea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isus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without adopting the essence of multi-cultural theory, and we have lost the good opportunity to experiment multi-culturalism. Finally, I suggest the two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e is to strengthen the multi-cultural elements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generousness of family policy.

Keywords : muliti-culturalsm, multi-cultural family policy, familism, marriage immigrant

